

반값 농자재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8
------------	-----

제안연월일 : 2024. 11. .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평창군 농업인에 대한 영농자재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반값 농자재 지원 사무를 관내 농자재 취급업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반값 농자재 도비 지원사업 시행 지침

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

- 농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비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홍보 등 위탁협약 각 조에서 정하는 사항

라. 민간위탁기간

- 2025. 1. ~ 2027. 12.(3년)

마. 수탁자 선정계획(매년 공고 후 심의 통한 수탁기관 선정)

- 모집공고 및 심사·선정('24. 11. ~ 12월)
- 위탁협약 체결('24. 12월)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사업대상: 5,350농가
 - 사업비: 16,666백만원(보조 8,333 자부담 8,333)
 - 보조: 도비 700백만원, 군비 7,633백만원
 - 산출근거
 - 농가 논·밭별, 경지면적별 9구간 설정하여 차등 지원
- * 평균 3,110천원 × 5,350농가 × 50% ≈ 8,333,000천원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농가의 농자재 구매는 지역의 농협 및 농약사·종묘사에서 대부분 구매하고 있으나, 일반 보조사업으로 농자재 구매시 많은 농가들이 서류 구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임.
- 또한 농업인의 행정 불편 사항 해소 및 능률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절차 간소화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농번기에 맞춰 필요 농자재의 시기적절한 공급(구매)과, 농가의 농자재 구매 접근성 향상 및 보조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관내 소재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위탁운영이 필요함.
- 이에 일정요건 이상의 기준을 갖춘 농자재 공급업체를 공고를 통하여 모집 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본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아. 기타사항

○ 반값 농자재 공급 대행업체 현황(2024년)

읍면별	2024년	
합계	37개소	협약체결 업체 (농협 13, 시판업체 24)
평창읍	5	1. 평창농자재마트 2. 평창희망농약사 3. 평창농협 4. 흥농종묘사 5. 농경상사
미탄면	1	1. 평창농협 미탄지점
방림면	3	1. 평창농협 방림지점 2. 평창농협 계촌지점 3. 대진상사
대화면	6	1. 대화종묘사 2. 대화농협 3. 원더풀아그로(안미농약사) 4. 대풍농약사 5. 중앙종묘사 6. 대동영농산업
봉평면	3	1. 현대종묘사 2. 봉평농약종묘사 3. 봉평농협
용평면	6	1. 용평농약사 2. 풍년농약농자재마트 3. 유기농사람들 4. 대관령원예농협 장평지점 5. 봉평농협 장평지점 6. 봉평농협 용평지점
진부면	8	1. 농우 2. 흥농종묘 3. 고랭지종묘사 4. 천지인농자재 5. 늘푸른농자재마트 6. 진부농협 7. 치약종묘사 8. 진부농약사
대관령면	5	1. 대관령농약사 2. 대관령농협 3. 대관령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사업소 4. 횡계종묘사 5. 대관령농협 유천지점

○ 읍면별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현황(2024년)

(단위 : 원)

읍면별	대상자	사업비 (보조금)
합계	5,080 농가	15,538,213,000 (7,769,106,500)
평창읍	913	2,194,509,000 (1,097,254,500)
미탄면	322	932,478,000 (466,239,000)
방림면	476	1,530,952,000 (765,476,000)
대화면	792	2,241,713,000 (1,120,856,500)
봉평면	605	1,778,387,000 (889,193,500)
용평면	455	1,407,600,000 (703,800,000)
진부면	1,093	3,631,100,000 (1,815,550,000)
대관령면	424	1,821,474,000 (910,737,000)

관계법령(지침) 빨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19.4.12.]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 ·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2. 필요조건: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

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할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

제7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2.3.>

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반값 농자재 도비 지원사업 시행 지침

6. 지원방법

- 지원형태: 민간위탁(대행) 사업으로 일원화 * 민간경상보조(1년간 유예)
- 지원기간: 농자재 공급시기를 고려하여 자율 결정(~10. 31.까지)하되 시군별 영농시기, 농자재 공급가능 시기, 재정여건 등 고려하여 탄력 운영 가능